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7조의2의 제목 “(안전순찰원)”을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57조의2(<u>안전순찰원</u>) ①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의2(<u>고속국도 안전순찰원</u>)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

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u>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u>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23
----------	------

발의연월일 : 2024. 11. 20.

발 의 자 : 천준호 · 박성준 · 박상혁
추미애 · 이강일 · 한민수
박홍배 · 강선우 · 정을호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u>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u>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u> <u>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u> <u>치</u> <u>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u> <u>는 업무</u> <u>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u> <u>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u> <u>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u> <u>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u> <u>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u> <u>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u> <u>로 정한다.</u>
--	--